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9월 27일(화) 08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이동욱 성장동력정책과장(02-2110-4754), 임채욱 사무관(4755)		

산업융합촉진법 10월 6일 본격 시행

-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(9.27일)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최중경)는 금년 4월5일 공포된 **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**이 **9월27일(화) 국무회의를 통과**하여 **10월6일(목) 본격 시행**된다고 밝힘

* 시행령 추진경과 : 관계부처협의(5.25~9.20) → 입법예고(6.9~29) → 공청회(7.11) → 규제심사(9.5) → 법제처 심사(9.6~9.19) → 차관회의(9.26)·국무회의(9.27)

○ 이로써 지난해부터 **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**하여 기존 **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**하고 **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**하기 위해 중점 추진해 온 **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마무리**되어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**법적·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**되었다고 밝힘

□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(36개)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**총 7장 39개 조문으로 구성**

○ 특히, **중소·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**를 마련하는 한편,

- **융합신산업의 범위**와 **산업융합형 R&D과제** 선정시 **중소기업의 육성·참여가능성을 고려**하도록 하며 **중소·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**에 대해 **자금, 보증, 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** 근거를 마련

< 시행령안 주요내용 >

◇ (**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**)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**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**에 대해 **최대 6개월내 fast-track 인증** 지원

* 소관부처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**적합성인증협의체**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협의하고, **적합성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**

◇ (**중소·중견기업 융합활성화**) **융합신산업의 범위**와 **산업융합형R&D과제** 선정시 **중소기업의 육성·참여가능성** 고려, 중소기업자등의 **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, 보증, 판로 등 패키지 지원,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·지원** 등

◇ (**산업융합 추진체계 구축**) 산업융합발전위원회(총리위원장), 옴부즈만,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,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세부 절차 마련

* 간사(공동) : 지경부·교과부 장관 / 위원 : 관계부처 장관, 민간전문가 등

※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

□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**중소·중견기업 등이 법 제정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**할 수 있도록 **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**할 계획

○ 우선, 국가 산업융합정책의 컨트럴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**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연내 구성**(12월)하고,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**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**('12.3월)도 마련할 계획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융합활성화 촉진을 위해 **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***시키고,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등을 지원하는 **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**(11월 임명)도 운영할 계획

*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**태양광LED, USN계량기, 트럭지게차 등의 모의인증을 마무리**(10월)하고, 모의인증 절차 및 시사점 등의 홍보·공유

- 또한, 중소·중견기업에게 산업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융합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는 **산업융합로드맵을 수립**(12월)하고 중소·중견기업의 **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**할 계획

 * '12년도 신규사업으로 '산업융합촉진사업' 70억원 확보(정부안)

○ 제품과 R&D 등의 산업융합의 성과(정도)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**산업융합지수를 개발**(12월)하고, 산업융합관련 정책과 기업 지원의 구심체로서 **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**(11월)하는 등 산업융합촉진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

□ **한편,**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른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**제 1회 산업융합주간행사(9.28~10.1, 킨텍스)를 개최**하고,

○ **지방의 중소·중견기업 등을 대상**으로 **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을 소개**하는 **지역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**이라고 밝힘

□ **김재홍 성장동력실장**은 "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**법적·제도적 기반은 완비**되었다"며,

○ "이제는 우리 **중소·중견기업들이** 법적·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**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**하고 **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**하다"고 강조

별첨 : 산업융합촉진법·시행령 주요내용

산업융합촉진법·시행령·시행규칙(안) 주요내용

구 분	산업융합촉진법(총7장 39조)	시행령(총7장 39조)	시행규칙(안)
제1장 총칙	• 목적, 정의, 국가등의 책무, 다른 법률과의 관계 (제1~4조)	• 목적(제1조)	• 목적(제1조)
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등	•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·실행계획 수립·시행(제5~6조) - 기본계획은 5년마다,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	•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·실행계획 수립 절차(제2~6조) - 지경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	
	• 산업융합 관련 통계 조사·작성(제7조)	• 산업융합 통계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(제7조) -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·제조·판매현황, 수출입현황, 연구개발 및 투자규모, 인력현황 및 수요전망 등	
	•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등(제8~9조) - **총리(위원장), 지경부·교과부(공동간사)**, 관계부처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(25명이내) - 범부처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·조정하는 역할 수행 - 과학기술과 관련 사항은 국과위와 사전 협의	• 산업융합발전위원화·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(제8~10조) - 적합성인증과 융합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처 중심으로 구성 (기재부, 문체부, 국토부, 방통위, **국과위, 중기청** 등) - 주요 경제정책으로 부처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**경제정책조정회의**를 거치도록 함 - 전문위원회는 관계부처 4급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(25명 이내)	
	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(제10조) - 지경부 장관이 산업융합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 - 융합현장의 애로발굴·해소,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	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(제11조) -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, 매분기마다 활동내용 등을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	

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	◦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처리(제11~15조) - (요건) 산업융합신제품으로서 개별 법령상의 허가등의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불합리한 경우 - (심사) 소관 부처는 소속 공무원,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인증 기준 마련, 시험·검사 등 심사 - (인증) 안전성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**최대 6개월 범위내 인증** (안정성 등 확보를 위해 조건부 인증 가능) * 인증을 받은 경우 개별 법령에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	◦ 적합성인증 세부처리절차(제12~18조) - 인증기준 등 마련을 위해 적합성인증 협의체 구성·운영 * 협의체는 관계부처 공무원, 인증시험분야 전문가, 학계·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인증기준, 시험검사방법·절차, 시험검사기관 등 협의 - 적합성인증협의체 구성(30일 이내)→인증기준 등 마련(90일 이내)→시험검사(60일 이내) 등 최대 6개월내 수행	
	◦ 손해보장사업의 실시(제16조) -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	◦ 손해보장사업 가입대상 및 내용 등 (제19~20조) - 개별 법령상 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서 소관부처에서 **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큰 제품으로 인정**하는 경우	
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	◦ 융합 신산업의 지원(제17조) - 융합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양성, 연구 활성화, 사업모델 개발·확산, 국제협력 등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	◦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(제21~22조) 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**기술·산업간 연계정도, 고용창출효과, 중소기업 육성 가능성 등을 고려**하여 **융합신산업의 범위를 확정**	
	◦ 산업융합형 연구개발 활성화 등(제18~21조) - 관계부처는 **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사업**을 **중점 추진**하도록 함	◦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(제23~25조) 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**기술융합정도, 실현가능성, 고용창출효과, 중소기업 참여가능성 등을 고려**하여 선정	◦ 산업융합 연계조직 지원 대상(제2조)
	◦ 이종산업간 인력의 상호교류 지원(제22조) - 이종 산업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**산업융합선도기업으로 선정·지원**	◦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(제26조) - 산업융합선도기업에 대해서는 **산업융합형 연구개발사업**과 **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에 우선 지원**할 수 있도록 함	

	◦ 시범사업의 실시(제23조) - 산업융합 **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보급 활성화**, 허가 받기 전 **제품·기술의 안정성·시장성 등을 검증**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지원	◦ 시범사업의 절차·지원(제27~28조) - **둘 이상의 부처**가 관련된 시범사업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**예산,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** 가능	
	◦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(제24~25조) - 중소기업자등이 산업융합을 통한 **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**할 때 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	◦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·절차(제29~30조) - 중소기업자등에 **중견기업을 포함**시키고, 연구과제개발 및 융합자금, 보증, 판로 등 패키지 지원	
	◦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(제26~27조) - 지경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센터로 지정 * (역할) 산업융합 시장 조사분석, 정부 위탁사업, 창업·경영지원, 융합신산업 발굴 지원,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 등	◦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절차와 요건 등(제31~33조) - 지경부 장관이 출연연, 비영리 법인 등으로서 산업융합 관련 전담인력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지정	◦ 산업융합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과 지정서 교부(제3조)
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조성	◦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(제28조) -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융합 특성화대학, 대학원, 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마련	◦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(제34조) - **지경부장관과 교과부장관**이 **상호 협의하여 공동**으로 산업융합특성화대학등을 지정	
	◦ 산업융합 표준화, 국제협력, 산업융합문화 기반 조성 등(제29~31조)	◦ 산업융합표준화 사업, 국제협력 등 대행기관 등(제35~36조)	
제6장 보칙	◦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, 청문, 수수료, 위임 및 위탁,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(제32~37조)	◦ 수수료, 권한의 위임 및 위탁(제37~38조)	
제7장 벌칙	◦ 벌칙, 과태료(제38~ 39조)	◦ 과태료 부과·징수(제39조)	